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7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이학영·조 국·임호선

박정현 • 이정문 • 이수진

한정애 · 김영배 · 한민수

전재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

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 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한다)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로자에게 이

- 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09조제1항 중 "제44조"를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2조"를 "제42조, 제44조제2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
| 지급) ① (생 략) | 지급)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 |
| | 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 | 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 |
| | 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
| |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
| |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
| |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
| |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
| | 지급하여야 한다. |
| <u><신 설></u> | ③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 |
| | 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 |
| | 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 |
| | 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
| | 월(月)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
| | 제외한다]에 해당 근로자에게 |
| |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 |
| | <u> 여야 한다.</u> |
| <u> <신 설></u> | ④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 |
| | 는 제3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 |
| |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
| | |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109조(벌칙) ①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 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 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 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 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 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정보시 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 다.
-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도 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 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 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 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 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u>제4</u>
 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
 항·제4항·제5항·제7항, 제
 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3. 4. (생략)
- ③ (생략)

| 제44조제1항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
| 음) |
| ② |
| <u></u> |
| |
| 1 /됬케미 기 () |
| 1. (현행과 같음) |
| 2 <u>利4</u> |
| <u>2조, 제44조제2항·제3항·제</u> |
| <u>4항</u> |
| |
| |
| |
| |
| 3. • 4. (현행과 같음) |
| ③ (현행과 같음) |